



MINI Market Report

국가	대만
제품	채식라면(식물성 원료)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ONTENTS

I. 대만 마케팅 방안	1
1. 대만 시장 특징	1
2. 대만 시장 진출 TIP	2
II. 대만 시장 정보	3
1. 대만 라면 시장 규모	3
2. 대만 라면 시장 전망	4
III. 대만 가격 정보	6
IV. 대만 유통 정보	8
1. 도매 및 소매업의 특성	8
V. 대만 통관 정보	10
1. 통관 절차	10
2. 관세 현황	12
VI. 대만 검역 정보	13
1. 검역 정보	13
2. 일반 가공식품 검역 정보	20
3. 검험검역부처 연락처	21
VII. 대만 라벨링 정보	22
1. 식품 라벨링 정보	22
2. 수입식품에 대한 라벨링 검사	29
VIII. 대만 바이어 정보	34

※ 참고자료

I 대만 마케팅 방안

1. 대만 시장 특징

□ 한국이 최대 라면 수입 대상국

- 대만의 최대 라면 수입 대상국은 한국으로, 전체 수입산 라면의 45%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도 대부분 한국 라면이 판매되고 있는데, 한국 방송을 통해 소개된 짜파구리(짜파게티 + 너구리)를 벤치마킹하여 판매하는 판매자도 있는 것으로 보아 현지에서의 한국 라면 인기를 실감 할 수 있음

□ 색다른 한국 라면을 찾는 대만 소비자들이 늘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만 지사에 따르면, 현지 행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라면시식행사 결과, 신라면 같은 매운맛 라면 외에도 짜장 라면, 기스면, 치즈맛 라면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음
- 뿐만 아니라 비빔면도 현지 라면과 비교, 건조하지 않아 먹기가 좋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한국산 라면의 쫄깃한 면발과 독특한 맛, 그리고 짜지 않은 국물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

□ 대만 소비자의 라면 선호도 상승세

- 대만 소비자의 라면 선호도는 2013년 기준 49.6%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라면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라면 판매가격 상승세

- 국내산 및 한국산 라면은 세계 농산물 가격 변화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인상되는 추세
- 대만 소비자는 가공식품 구매에 있어 가격을 중요시 여기므로, 불안정한 가격

변동은 라면 수요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음

2. 대만 시장 진출 TIP

□ 채소 위주의 채식문화 확산 긍정적 작용 가능성

- 대만 내 채식주의자 인구는 미국과 유럽의 채식인구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 여기에 대만 정부가 2009년부터 ‘채식의 날’을 지정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채식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신선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채식 제품을 개발해 수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것으로 분석
- 이에, 삼육유기농자연식품의 채식라면 제품이 시장에 어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한인들이 많지 않다는 점 유의해야

- 대만의 경우 한인(휴학생, 주재원 포함)들이 3,000명도 되지 않아 한국 식품 기업들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음
- 일반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인들의 소비를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이 현지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임

□ 맞춤형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전개 필요

- 대만 소비자들의 경우 맛을 봐야 제품을 믿는 성향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현지에 상품 출시와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직접 소개하는 시식 마케팅이 시장 공략에 효과적일 것

II 대만 시장정보

1. 대만 라면 시장 규모

□ 2013년 기준 대만의 라면 수입규모는 1,387만 6,000달러이며(HS code 1902.30 기준), 세계라면협회(WINA)에 따르면 대만의 라면 수요량은 9,800만 개로 전 세계 상위 15위를 차지하고 있음

□ 대만 라면시장을 제품수명주기 단계로 살펴볼 때, 이미 성숙기에 해당되어 현재 대만 라면시장은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음

- 시장규모의 한계성에 대응해 해외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추세

<최근 3년간 대만 라면 수입규모 및 성장률>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수입 규모	증가율	수입 규모	증가율	수입 규모	증가율
수입 규모 및 성장률	11,475	24.85	14,739	28.45	13,876	-5.86

출처: WTA(World Trade Atlas)

□ 그 중, 채식 라면이 포함되는 라면 HS code는 1902.30.1020 (고기를 포함하지 못하는 즉석 국수)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대만 라면 수입 동향

<대만/라면 주요 수입국 현황 (HS Code : 1902301020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율 13/12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총계	9,559,288	12,850,114	9,391,312	100.00	100.00	100.00	- 26.92
1	한국	4,129,358	6,114,319	4,396,001	43.20	47.58	46.81	- 28.10
2	인도네시아	1,162,488	1,563,735	1,489,457	12.16	12.17	15.86	- 4.75
3	일본	1,541,030	1,495,880	937,525	16.12	11.64	9.98	- 37.33

4	태국	705,329	902,245	670,765	7.38	7.02	7.14	- 25.66
5	베트남	636,830	958,632	669,127	6.66	7.46	7.12	- 30.20
6	홍콩	688,328	733,769	353,695	7.20	5.71	3.77	- 51.80
7	말레이시아	244,955	369,371	346,993	2.56	2.87	3.69	- 6.06
8	싱가포르	62,419	275,080	187,732	0.65	2.14	2.00	- 31.75
9	영국	218,317	171,241	171,260	2.28	1.33	1.82	0.01
10	필리핀	152,839	257,259	164,738	1.60	2.00	1.75	- 35.96

출처 : GTA (<http://www.tradestatistics.com/gta/>)

- 대만의 라면(고기를 포함하지 못하는 즉석 국수) 수입은 2013년 기준 939만 1,312 달러 전년 대비 26.92% 하락함
- 전체적인 라면 수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45%가 넘는 수입량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2. 대만 라면 시장 전망

<대만 라면시장 생산가치 및 성장률>

(단위: NT\$ 억, %)

구분	2010	2011	2012
생산가치	94.8	101.1	106.2
성장률	1.2	6.7	5.1

출처: 경제부 기술처 ITIS

<대만 연간 라면 매출액>

(단위: NT\$ 억)

구분	2010	2011	2012
매출액	95.5	102.1	105.4

출처: 경제부 기술처 ITIS

- 2012년 기준 대만 라면시장의 생산액은 106억 2,000만 신타이완달러, 매출액은 105 4,000만 신타이완달러로 생산 가치 및 매출액 규모가 꾸준히 상승함

<대만 소비자 라면 선호도>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선호도	26.2	30.6	42.8	48.0	49.6

출처: 2008~2012년 대만 식품 소비자 조사 통계 연감

□ 대만 소비자의 라면 선호도는 2013년 기준 49.6%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라면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미 라면 소비자의 약 60%는 라면을 정식 식사로 섭취하고 있음

□ 반면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라면 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국내산 및 한국산 라면은 세계 농산물 가격 변화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인상되는 추세

- 대만 소비자는 가공식품 구매에 있어 가격을 중요시 여기므로, 불안정한 가격 변동은 라면 수요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음

□ 색다른 한국 라면을 찾는 대만 소비자들이 늘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만 지사에 따르면,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로 치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라면도 다시 한 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

- 눈여겨볼 점은 최근에는 매운맛라면 외에 색다른 한국 라면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

- 현지 행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라면시식행사 결과, 신라면 같은 매운맛 라면 외에도 짜장 라면, 기스면, 치즈맛 라면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음


- 뿐만 아니라 비빔면도 현지 라면과 비교, 건조하지 않아 먹기가 좋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한국산 라면의 쫄깃한 면발과 독특한 맛, 그리고 짜지 않은 국물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

III 대만 가격 정보

- 로천(露天)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진행을 하였으며, 판매자에 따라 평균 ±5~20 위안 (5개 묶음 기준) 의 가격 차이를 보임
- 라면 카테고리의 상위 페이지 대부분이 한국 라면이며, 5개 묶음 판매, 12개입 박스로 판매하는 판매자도 많은 점. 한국 방송을 통해 소개된 짜파구리(짜파게티 + 너구리)를 벤치마킹하여 판매하는 판매자도 있는 것으로 보아 현지에서의 한국 라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음
- “야채라면(蔬菜拉麵)” 으로 검색하면, 대만의 蔬菜拉麵(슈차이라미엔) 1개의 라면이 검색됨

1) 야채라면


화폐단위 : 대만 위안

제조국 회사명	제품 사진	상품명	가격	특징
대만 리仁(리런)		蔬菜拉麵 (슈차이라미엔)	29 위안	362Kcal, 4인분 구성 면은 통밀가루와 식물성 기름을 사용 구성 야채 종류 : 다시마, 녹색 완두콩, 옥수수, 당근, 양배추

출처 : 로천 (<http://www.ruten.com.tw>)

2) 비(非)야채 라면

화폐단위 : 대만 위안

제조국 회사명	제품 사진	상품명	가격	특징
한국 농심(农心)		신라면	150 위안 5개입	1986년 출시. 특유의 한자로 된 매울辛자가 가장 먼저 연상이 되면서 옥편 디자인이 떠오르게 함. 우리나라 대표적 라면으로 사랑 받고 있음

한국 농심(农心)		짜파게티	160 위안 5개입	1984년 출시. 고급올리브유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짜파게티는 어린이를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즐기고 있음
한국 삼양(三養)		불닭볶음면	190 위안 5개입	2012년 출시. 청양고추(약4,000~10,000 SHU)에 버금가는 초강력 매운맛(당사분석치기준 4,404SHU)톡톡 씹히는 참깨와 고소하게 구운 김가루를 별첨
삼양 (三養)		나가사끼 짬뽕	150 위안 5개입	2011년 출시. 나가사키 지방의 특색있는 짬뽕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현한 제품. 돼지뼈 육수의 깊은 맛과 시원한 해물 맛이 느껴지는 매콤한 흰색 국물 풍성한 해산물 후레이크와 쫄깃한 면발이 조화를 이루는 신개념 白짬뽕
NISSIN 日清(르칭)		出前一丁(츄치엔 이딩)	125 위안 5개입	참기름을 첨가하여 고소만 맛이 특징.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현지 공장을 통해 다양한 맛의 라면들이 생산 중
NISSIN 日清(르칭)		味噌拉麵 (웨이청라미엔)	150 위안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현지 공장을 통해 다양한 맛의 라면들이 생산 중
NISSIN 日清(르칭)		味噌拉麵 (웨이청라미엔)	150 위안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현지 공장을 통해 다양한 맛의 라면들이 생산 중

출처 : 로천 (<http://www.ruten.com.tw>)

IV 대만 유통 정보

1. 도매 및 소매업의 특성

□ 대형화

- 대만 도매 및 소매업체는 “원스톱 서비스” 를 지향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매장의 면적, 상품의 종류 확대 및 프랜차이즈의 거점 등을 확대하고 있음
- 대만은 전국에 94,000 여 개나 되는 편의점이 분포해있는 편의점 천국인데, 최근 대만의 편의점들은 60~80 평 정도의 공간에 화장실, 테이블, 베이커리, take-out 커피 판매대까지 갖춘 대형 편의점들이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어 편의점의 양판점화 추세를 보임

□ 프랜차이즈화

- 소비자의 가격 민감 추세를 반영하여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매장수를 확대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원가를 낮춤

□ 다원화의 차별화

- 소비자의 기호가 다원화됨에 따라 타겟 소비자층에 따라 업종과 상품이 다원화
-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유통업체 간 경합을 유도함에 따라 업종의 다원화를 촉진하고 상품의 차별화로 이어짐

- 대만 시장에서 수입소비재의 가격 구조는 대체로 ‘일본산>유럽산>미국산>제3국 가공생산 일본 브랜드 제품>한국산>대만산>기타 국가 수입제품’ 순으로 인식되어 있음

<유통업체별 영업액 규모 및 해당 주요 유통업체>

분류	2012년 영업액 (NT\$ 억)	비중 (%)	업체명	지점수 (개)
백화점	2,800	27.23	新光三越	13
			遠東	11
			太平洋SOGO	8
대형 할인매장	1,714	16.67	Carrefour	69
			RT-MART	22
			Geant	19
슈퍼마켓	1,516	17.74	全聯福利中心	600
			Wellcome	254
			Farmers' Association	90
			Matsusei	71
편의점	2,677	26.04	7-Eleven	4,861
			Family Mart	2,856
			Hi-Life	1,286
			OK	890

출처: 경제부 통계처 '물류업의 특성'

중소기업이 다수

- 대만 물류업체는 중소기업 위주로 자본규모는 5,000만 대만달러 이하, 종업원수 100인 이하가 많은 편

IT 기술 응용 증가

- RFID 등 각종 IT 기술을 응용하여 서비스의 효율 제고에 노력

전면적 서비스 기능

- 정보서비스, 수출입 통관 대행, 택배 서비스 등 서비스를 통해 포괄적인 물류 서비스 제공

V 대만 통관정보

1. 통관 절차

□ 대만의 식품 수입하는 일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수입신고

- 수입신고는 납세의무자(The duty-payer of customs duty)가 직접 해관에 가서 신고하는 직접신고와 수입신고 및 납세 등의 수속을 위탁업체(Customs broker)가 대행하는 위탁신고 방식이 있음
- 수입신고인은 수입상품이 실린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해관에 수입신고수속을 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해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기간이 만료된 익일부터 1일당 200대만달러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함
- 입항일로부터 36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해당 수입상품을 해관에서 판매하여 세금과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해관에서 보관하며, 수입업체가 5년 내에 선하증권 및 기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환급 받음
-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수입신고서(進口報單, Customs Declaration : Import)
 - Delivery Order(D/O) 혹은 Air Waybill(AWB)
 - Invoice 혹은 Commercial Invoice 2부
 - Packing List 1부
 - Container Loading List 1부
 - Import Permit(I/P) 원본 : 수입제한 항목에 해당
 - 위임장(委任書) 1부 : 위탁신고의 경우 해당
 - Declaration of Value 2부
 - 원산지증명서(C/O) : 수입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수입물품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통관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Catalogues, Specifications, Descriptions
 -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서류

- 상품 검사

- 관세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대만에 수입되는 상품 중 일부 검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함
- 검사 시에는 「수출입화물검역준칙(進出口貨物查驗準則)」 제11조에 의거하여 수입 상품에 대한 Packing List, Container Loading List, 팸플릿, 설명서, 상세도(설계도), 공증 보고서 등을 해관에 제출해야 함
- 수입식품 검사 방법에는 전수검사, 샘플검사, 서면검사가 있음

- 품목 분류

- 수입자는 「中華民國海關進口稅則」에 의거해 수입상품에 대해 정확한 세칙과 세율을 적용해 수입 신고서에 기입해야 함
- 해관수입세칙을 이용하여 수입상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관수입세칙의 구성, 분류원칙, 배열순서 및 각종 설명 및 수입화물의 성분, 용도, 특성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
- 만약 정확한 품목분류가 애매하거나 어려울 경우, 사전에 대만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기해 추후에 품목분류 오류 발생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구비서류: 신청서, 카탈로그, 매뉴얼, 성분표, 감정보고서, 가공제조설명서, 조작방법 및 원리, 사진이나 도안, 샘플(심사 후 반환신청이 가능함), 기타 관련 자료
- 관세총국 세칙처 문의전화: (886-2)2550-8184
- 신청서 다운로드: http://web.customs.gov.tw/rate/rate/tariff_pre_line1.doc
- 대만에 농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 및 개인은 수입식품 검사 신청서 및 식품 기본자료와 동일 수입식품 관련 지정문서(허가 등)를 구비하여 표준검사국에 검사신청 및 제출해야 함

2. 관세 현황

□ 라면 관세

HS code	품목명	관세율
1902.30-1010	Ramen	20%

□ 과세 범위

- 관세는 국외로부터 대만으로 수입된 화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대만에서 수출되는 화물 혹은 대만의 항구 및 공항을 경유한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대만의 관세는 세관 수입세칙 규정의 화물종류와 적용세율에 의거하여 종가세 (從價稅)와 종량세(從量稅)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 종가세의 규정은 공평합리적인 제도이지만 화물 단가의 평가가 어렵고 납세 쌍방간의 쟁의를 유발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품질이 상이하고 소비자 가격의 격차가 높아 기준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20여개 수입 농·수·축산품 등에 대해서는 1976년부터 종량세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 대만으로 수출 시 세금 계산 방법

- 관세=CIF가격×관세율
- 부가가치세=(CIF가격+관세(+물품세+담배 및 주류세))×5%
- 물품세=CIF가격×세율
- 무역진흥서비스비=CIF가격 × 0.04%

VI 대만 검역 정보

1. 검역 정보

□ 관리 체계

- 행정원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行政院衛生署食品藥物管理署)
 - 행정원 위생서 소속 식품약물관리국은 대만 내 식의약품 및 관련제품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 감독하고 수입식품들의 검험은 표준검역국에 위임
- 경제부표준검험국(經濟部標準檢驗局)
 - 경제부 소속 국가 최고의 검험기관으로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업, 공업, 광업상품과 수출 및 수입하는 모든 상품들을 관련 법규에 따라 검사. 검사가 필요한 상품들은 표준검역국에서 실시하는 규격에 합격해야 수입, 수출 및 시장 판매가능
- 행정원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行政院農業委員會動植物防疫檢疫局)
 -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의 방역과 검역체계를 구축하여 반입되는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역병충해를 감지하고 해외로부터의 전염병을 예방. 기룽(基隆), 신죽(新竹), 타이중(台中), 까오슝(高雄) 4개의 분국과 10개의 검역소에서 검역을 집행

□ 법률 체계

- 법적근기 : 「식품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 「동식물방역검역법(動植物防疫檢法)」,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 「담배주류관리법(菸酒管理法)」 등
 - 식품위생관리법(2013년 6월 19일 전면수정)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의 위생, 안전, 품질관리법으로 먹고 마시는 식품과 그 식품의 재료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
- 행정 법규

- 「식물방역검역법시행세칙(植物防疫檢疫法施行細則)」
- 「대만수입식품/식품제품 검역규정(中華民國輸入隻五或中華民國植品檢驗規定)」
- 「중약재수입검험작업규정(中藥材進口檢驗作業規定)」
- 「수입식품검사방법(輸入食品檢驗辦法)」
- 「수입식품검사작업규정(輸入食品檢驗作業規定)」

<식품위생관리법 주요부분>

제15조	<p>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아래 해당 사항인 경우 제조,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시판, 수출입 증정 및 공개 진열이 불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 변질 혹은 부패된 것 - 제2항 : 덜 익어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 - 제3항 : 유독성이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포함한 것 - 제4항 : 전염병에 감염된 생물 혹은 유행성 바이러스에 중독된 것 - 제5항 : 농약 잔류 량이나 동물성 의약품 잔류 량이 전 기준을 초과한 것 - 제6항 :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것이나 방사능 제한치를 초과한 것 - 제7항 : 불량제품이나 위조제품 - 제8항 : 유통기한이 지난 것 - 제9항 : 과거 식용전례가 없거나 인체에 무해하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
제16조	<p>식품기구, 용기, 포장, 식품용세정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사용 금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 - 불량 화학용품 사용 - 기타 유해성 물질 사용
제17조	<p>식품, 식품용 세정제, 식품조리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은 중앙당국에 의해 규정된 위생, 안전, 품질기준에 따라야 함</p>

<위반 식 법적 제제 조치 강화 부분>

개정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제36조 →제 44조~제 49조	일반 규정 위반 시 NT\$3만~5만 달러 구형 가능	NT\$3만~1500만 달러까지 벌금 구형 가능
	위생 관련 기관이 인체 건강에 중대한 위해라고 판정할 경우 NT\$6만~600만 달러까지 구형 가능	업체의 위반 범위가 법정 최고 벌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 될 시 그 이상 구형 가능
	인체 건강 위해했음을 증명자료로 제출 시 형사처리 가능	미 허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직접 3년 이하의 구형처리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인명사상을 내었을 경우 무기 징역 구형까지 가능

<수익식품 관리 강화>

개정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6장신규제정 제30조~제36조	식품수입관리에 대한 전문 후을 신 규 제정 현행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 방법(輸入食品及 相關產品查驗辦 法)」의 내용 일부 를 기본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 검사방법 조문(輸入食品及相關產品查驗辦法條文)」의 내용의 일부를 「식품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의 제6장으로 삽입함 - 신고 내용이 실제와 불일치 시 NT\$3만 ~300만 달러 벌금 구형이 가능하고 수입검사 잠정 중단됨. 비 판매목적의 수입검사 면제 상품이 판매된 사실이 발각될 시 1년간 수입검사 면제 정지됨 - 변경수입검사 등 방식으로 수입 시 보증신청 후 먼저 반입 가능함. 단 필요 시 심사 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 특정 지점에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이동하거나 판매 또는 지정 보관 지점과 실제 보관지점이 다른 경우 1년간 보증신청이 불가하고 최고 12배까지의 벌금 구형이 가능함 - 안전성 위험도가 높은 식품은 수입 전 계통성 검사가 실시되며, 안전위생문제 발생 시 대만 국경 외 지역으로 파견원을 보내 조사함 - 중대한 식품 위생안전사건 발생 또는 수입검사 불합격 수준이 과도할 경우 특정업체, 생산지, 상품에 대해 수입검사 신청을 정지함

<식품 검사 강화>

개정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제40조 신규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검사」 전문 내용을 제7장으로 삽입하여 관리 강화, 검사 결과와 관련된 검사 방법 및 검사기관을 명시하고, 재검사 과정 등을 처리하여 공신력을 확보 -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기 또는 외관포장 및 식품용 세척제의 검사는 각 중앙담당기관 및 타기관 위임 또는 위탁을 통해 처리함. 중앙담당기관은 위탁 또는 위임 기관을 인증하고, 필요 시 그 인증도 타기관에 위탁 가능 - 식품위생검사 정보 공포 시 검사방법, 검사기관 및 결과 판독 근거도 동시에 공포

□ 수입식품검험검역

- 법률근거: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험방법조문(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
- 검사내용 : 제품의 성분 및 규격이 해당 위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사방식>

검험의 종류	내용
서류검사	검사면제 제품의 식품기본 자료표 등 관련 문서 조사 (위생증명, 검역증, 성분과 라벨링 등)
일반검사	2~5%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현장검사 및 라벨링 검사
강화검사	20~50%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현장검사 및 라벨링 검사
일반검험	2~5%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
강화검험	20~50% 비율로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
전수검험	각 배치별 표본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 (검사신고 의무인이 실험실 검사비용 지불)

□ 검험검역비용

- 「規費法」 제10조 1항에 의거하여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검험비용표준」 규정에 따라 검사비용 산출
- 검험비용의 종류는 조사비, 통지서 발급비, 검사비로 구성
 - 조사비 : 서류 검사비용 및 현장 검사비용
 - 밀, 보리 옥수수, 대두의 조사비 : 수입제품 CIF가격의 0.05% 비율로 책정
 -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조리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재, 식품용 세정제의 조사비 : 수입제품 CIF가격의 0.075%비율로 책정. 최소 검사비는 NT\$200이고 조사비가 NT\$100,00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해당비율의 절반으로 감액
 - 현장 검사비용 : 1인 1장소를 검사하는 기준으로 회당 NT\$500. 근무시간 외와 공휴일의 경우 추가비용 발생
 - 통지서 발급비 : 수입식품 및 상관제품의 허가통지서 발급비용으로 그와 관련한 재발급, 정정발급, 추가발급, 또는 변경사항 등 제비용을 포함. 매 부당 NT\$100
 - 검험 검역비: 검험 해당제품의 실험실 검역 항목비, 재검, 혹은 배치별 검험비용. 일반검험비(외관, 평균중량, 중량차이, 분해, 산도)는 NT\$1,500이고, 검사항목에

따라 해당 비용 책정

- 검험신청 제출서류

- 검험신청서
- 식품의 기본정보 신고
- 수입신고서 복사본

- 기타 중앙위생당국이 요청한 서류(동식물검역에 해당되는 제품은 수입검역신청서, 검역증명서 제출)

□ 조사 과정

- 같은 신고품목 명단에 있는 식품은 한 개의 배치로 검사를 실시(중앙위생기관의 관제 관리 하에 있거나 불합격 기록자는 제외)

- 포장재질이나 용량이 달라도 제품분류범주, 품명, 브랜드, 제조공장, 원산지, 성분이 같은 제품
- 제품분류범주, 품명, 원산지가 같고 동일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제품
- 어패류의 활(活) 제품, 신선제품, 냉장제품 및 연체류 등의 4종은 1가지로 간주함

- 집행기관은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을 채취하여 당국이 지정한 실험실에서 검사를 실시

- 실험보고서의 결과가 규정에 부합하면 수입식품 허가통지서를 발급하고, 불합격자는 불합격 통지서를 발급받음

□ 샘플링 검사, 등록

- 검험 검역 집행기관은 검험대상 제품의 지난 검험기록, 관련 제품의 국내외 이슈화된 사례를 살핀 후 중점 검사항목을 검험하고 라벨링 표기법, 식품위생표준,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기준, 또는 위생안전 관련항목을 고려하여 검사

- 검험 검사 시 채취하는 샘플 표본량(각종 제품의 배치별 채취량)

- 벌크제품 : 2Kg
- 벌크식용유지 : 매 탱크마다 표본을 채취하여 합계 2Kg
- 고체-600g, 고·액체 혼합품-1Kg, 액체-1Kg(검험항목에 따라 채취량이 증가할 수 있음)

□ 중문 라벨링 면제제품의 검사

- 적용대상 : 선적 후 제품의 포장, 재포장, 또는 기타 공정이 필요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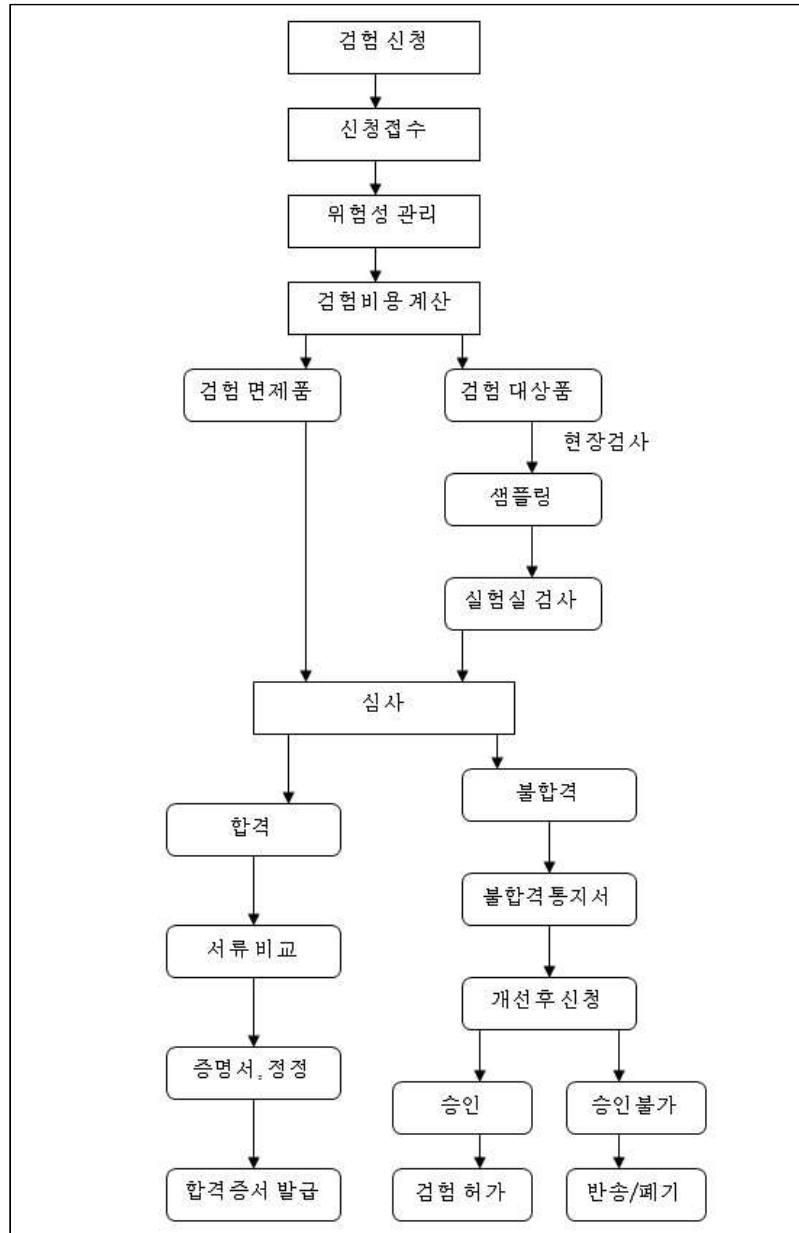
□ 개선 후 재검사과정

- 검험 불합격의 원인과 개선조건을 확인한 후 15일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1회로 제한함. 재검사는 동일 실험실에서 남은 표본으로 실시

□ 수입 후 시장 관리

- 중앙위생기관은 수시로 수입식품의 용도와 검사 면제품을 추적조사
- 불합격 수입식품은 중앙위생기관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공표
- 전수검험으로 지정된 제품은 5배치 연속 합격을 해야 일반검사 방식이 적용됨

□ 수입식품검사절차



출처: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2. 일반 가공식품 검역 정보

□ 일반식품의 위생기준

-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진행
- 제품은 그 고유의 맛과 색을 보존하고 부패, 변색, 악취, 이취, 오염, 곰팡이, 국제적 이슈, 기생충이 발견되면 안됨

<미생물 제한치>

제품 분류	대장균 수 (MPN/g)	병원성 대장균 수 (MPN/g)
준비처리 없이 제공되는 일반 식품 (세정, 탈피, 가열, 조리처리 등)	10 ³ 이하	음성
준비처리 후에 제공되는 일반 식품 (세정, 탈피, 가열, 조리처리 등)	-	-

출처: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 「식품 중 진균독 제한기준(食品中真菌毒素限量標準)」(2013.08.20 수정)

-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진행

<식품 중 아플라톡신(Aflatoxin) 허용치>

식품 분류	아플라톡신 허용치 (아플라톡신 B ₁ , B ₂ , G ₁ , G ₂ 포함)
식용 기름과 지방	10 ppb 이하
우유	0.5 ppb 이하 (아플라톡신M ₁)
분유	5.0 ppb 이하 (아플라톡신M ₁)
다른 식품	10 ppb 이하

출처: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식품 중 시트리닌(citrinin) 허용치>

식품 분류	시트리닌 허용치
홍국적색소	200 ppb 이하
Red yeast rice	5 ppm 이하
Red yeast rice를 포함한 복합식품	2 ppm 이하

출처: 식품약물관리서 (食品藥物管理署)

3. 검험검역부처 연락처

행정원 위생서 식품약품관리국

구역	사무처	전화	팩스
북구관리중심	기룡항사무처	(02)89788416	(02)24226188
	대북항사무실	(02)89788416	(02)24226188
	송산공항사무실	(02)89788416	(02)24226188
	마주대항사무처 (연강현 위생국)	(0836)22095	(0836)25024
	도원공항사무처	(03)2868300	(03)3833533
	중역사무실	(03)2863861	(03)2868364
중구관리중심	대중항사무처	(04)23692401	(04)26569687
	대중공항사무실	(04)23692401	(04)26569687
남구관리중심	까오송사무처	(07)2622501	(07)8121379
	까오송일항사무실	(07)2622520	(07)5217779
	까오송공항사무실	(07)2622527	(07)8011808
	금문대항사무처 (금문현 위생국)	(082)330697	(082)332065

경제부 표준검역국

구역	전화	팩스
대북총국	(02)2343-1700	(02)2393-2324
기룡분국	(02)2423-1151	(02)2422-8910
신죽분국	(03)542-7011	(03)532-5979
대중분국	(04)2261-2161	(04)2262-9193
대남분국	(06)226-4101	(06)226-5809
까오송분국	(07)251-1151	(07)251-5038
화련분국	(03)822-1121~3	(03)822-1023, 5133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구역	전화	팩스
대북총국	(02)2343-1401	(02)2343-1400
기룡분국	(02)24247363	(02) 2424-7364
신죽분국	(03)398-2663	(03)398-2313
대중분국	(04)2285-0198	(04)2285-8147
까오송분국	(07)972-0599, 536-0070	(07)5360027

Ⅶ 대만 라벨링 정보

1. 식품 라벨링 정보

□ 식품 라벨링 표기사항(위생관리법 제22조 명기)

- 품명
- 내용물 명칭: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표기. 주성분은 백분율 표기, 표기 상품, 주성분항목, 표기내용, 방식 및 각 상품의 실시 일자는 중앙담당기관이 지정한 것으로 함
- 중량, 용량 또는 수량
- 식품첨가물 명칭: 2가지 이상 혼합이고 기능성 식품인 경우 식품첨가물을 각각 분리 표기
- 국내 업체 명칭 및 전화번호, 주소
- 원산지(국)
- 유효일자
- 식품영양표시
- 기타 위생서가 공고한 표기 사항
- 식품영양표시는 그 준수사항에 맞게 표기해야 하며,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그것으로 함

□ 라벨링 표기 예외사항 별도 규정(위생관리법 제23조 명기)

- 식품 용기 또는 외포장의 면적 재질 또는 기타 특수 사항으로 인해 전항 규정대로 표기 할 수 없는 것은 주관담당기관이 일부 미표기 승인 공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표기

□ 식품첨가물의 상세화 표기(위생관리법 제24조 명기)

- 식품첨가물의 용기 또는 외포장 상 증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
- 품명 및 「식품첨가물」 글자 기입

- 식품첨가물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중량, 용량, 수량
-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유효기간
- 사용범위, 용량표준 및 사용제한
- 원산지(국)
-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

□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관련 상세화 표기(위생관리법 제26조 명기)

- 중앙담당기관의 공고한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은 중문 또는 통용부호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표기
- 품명
- 재질 명칭 및 내열온도: 그 종류가 2개 이상 혼합인 경우 분리 표기
- 중량, 용량, 수량
- 식품첨가물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대만 국내 담당업체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 원산지(국)
- 제조일자: 시간적 유효성이 있는 경우 유효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추가 명시
- 사용방법 및 사용주의 또는 경고사항
- 기타 중앙담당기관이 공고한 사항

□ 식품 표시와 광고성

- 식품위생관리법 제28조, 제29조 규정에 따르면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용 세척제에 대한 표시, 선전, 광고는 거짓이나 과장 및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됨
- 식품은 의료 효능의 표기, 선전 및 광고를 해서는 안 됨
- 위생서는 특수 영양식품의 광고범위, 방식 및 장소를 제한하는 공고를 할 수 있음. 권한 위임을 받아 기계 및 방송하는 전과업자는 광고 시작일로부터 6개월 동안 광고 위탁자의 성명(법인 및 그룹명칭) 신분증 및 사업자 등록증 거주지 및 전화번호 등을 보존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 피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됨
- 사용 금지 식품 표기
 - 예방, 개선, 감량, 진단, 질병치료 또는 특정 생리적 현상 등의 선정성 표현
예) 근시치료, 시력회복 등
 - 체내 질병과 관련된 성분을 감소 및 저하시킨다는 표현
예) 간 해독, 간지방 저하, 혈당 농도 억제 등
 - 질병 증상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
예) 갱년기 장애 개선, 신장 기능 보강 (한약재 효능에 대한 표현)
 - 출판물, 서적 인용 또는 타인 명의를 인용한 의료 효능 설명
 - 허위 과장 및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만한 표현

□ 위법 제제 조치

- 식품첨가물의 규격 및 사용범위, 제한 표준량을 초과한 경우는 폐기 및 몰수함. 단, 폐기 및 몰수 이전 소독 및 적당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을 부여함
- 중문 라벨링 규정 위반자는 기한 내 회수, 수정 통지하고 수정 이전에는 판매가 금지 됨

□ 시판포장식품 영양표시 방법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表示規範)」,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언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판포장식품 상에는 동시에 식품영양표시가 되어야 함

- 식품영양표시 방식 : 시장판매의 포장식품의 영양표기 방식은 포장용기 외면, 눈에 띄는 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함

- 표시항목
 - 제목 : [영양표시]

 - 영양 필수 표시 항목 : 열량(칼로리),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탄수화물(식이섬유포함), 나트륨 함량

 - 기타 선언된 영양소 함량
예) 고칼슘, 콜레스테롤 zero, 저나트륨, 저당 등 표기

-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기타 영양소 함량
 - 열량, 영양소 함량의 표시기준 : 고체(반고체)는 100Kg 및 Kg을 단위로 한, 매 분량의 표시, 액체(음료)는 100ml를 단위로 한 매 분량의 표시

 - 열량 영양소 및 트랜스 지방 함량표시 단위 : 식품 중에 함유하고 있는 열량에 대하여는 칼로리(kcal)로 표시하고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및 트랜스 지방은 Kg, 나트륨은 mg으로 표시하고 기타 영양소는 kg, mg으로나 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해야 함

 - 1일 영양소 섭취량의 기준치 : 각 영양소의 1일 필요 영양소 섭취량의 백분율로 증가하여 표시해야 함. 다음과 같은 항목의 수치를 표시하여 매일 영양소 섭취량의 기준치로 함

<1일 필요 섭취량 기준치>

열량	2000kcal	나트륨	2400mg	비타민 A	600g
단백질	60g	포화지방산	18g	비타민 B1	1.4mg
지방	55g	코레스테롤	300mg	비타민 B2	1.6mg
탄수화물	320g	섬유질	20g	비타민 C	60mg
칼슘	800mg	철분	15mg	비타민 E	12mg
포화지방산	18g				

자료 : 식품약물관리국 (食品藥物管理局)

- 수치 수정방식 : 영양소는 유효 숫자가 세 자리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매 분량,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및 나트륨은 정수로 표시하거나 소수점 아래 첫 자리 수까지만 표시 함
- 영양 표기 방식 규정 : 총 5종의 방식으로 표기 가능함

영 양 표 시(1)	
매1 분량 240ml 포장 포함량: 4분량	
매 분량 당	
열량	116 kcal
단백질	8 g
지방	4 g
포화지방	0.4g
불포화지방	0.2g
탄수화물	12g
나트륨	115mg
선언된 영양소 함량	
기타 영양소 함량	

영 양 표 시(2)	
매 100ml당	
열량	43.2kcal
단백질	1.0 g
지방	0.8 g
포화지방	0.4g
불포화지방	0.2g
탄수화물	8.0 g
나트륨	35.2mg
선언된 영양소 함량	
기타 영양소 함량	

영 양 표 시(3)		
매1 분량 30g		
본 포장 포함량: 7분량		
	매 분량	매100g당
열량	172.3kcal	574.2 kcal
단백질	1.6g	5.2g
지방	11.6g	38.6g
포화지방	0.4g	1.1g
불포화지방	0.2g	0.5g
탄수화물	15.5g	51.5g
나트륨	115mg	383mg
선언된 영양소 함량		
기타 영양소 함량		

영 양 표 시(4)		
매 분량 30g		
본 포장 포함량: 5분량		
	매 분량	매분량당 매일영양섭취량 기준치*백분율
열량	172.3kcal	4.7%
단백질	1.6g	5%
지방	11.6g	7.6%
포화지방	0.4g	%
불포화지방	0.2g	
탄수화물	15.5g	3.4%
나트륨	115mg	1.3%
선언된 영양소 함량		
기타 영양소 함량		

자료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表示規範)

□ 식품영양 표기 세부 규정

- 소위 <영양 선언>은 설명, 은유, 암시의 방식으로 식품의 특정 영양성질(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A, 고 칼슘, 저 나트륨, 무 콜레스테롤, 고 섬유 선식 등)을 표현하는 것이며, 식품 원료성분에 대하여(예를 들면 이 식품 성분이 맥아젤리, 옥수수유, 레시틴, 탄산칼륨, 비타민A 종려산, 비타민 B2, 비타민 D3등) 서술하는 것은 영양 과대광고에 속하지 않음
- <영양 선언> 高/低/多/少 등의 표현에 대한 기준 : 적당섭취량필요(需適當攝取), 보충가능섭취량(可補充攝取) 2가지 부류로 나뉨
- 적당섭취량필요(需適當攝取)
 - 열량,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 등은 적당량을 섭취해야지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부류임
 - “0” 영양표시 조건, 하기표 이하의 수준일 경우에는 “0” 영양표시 가능

열 량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4kcal 미만인 경우
지 방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5g미만인 경우
나트륨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5mg미만인 경우
콜레스테롤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5mg미만인 경우
포화지방산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1g 미만인 경우
당 성분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0.5g 미만인 경우

자료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언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 하기표 이하의 수준일 경우에는 <低>,<少>,<略舍 ; 약간포함> 영양표시 가능

	고체(반고체) 매 100Kg	액체 100ml 당
열 량	40kal	20Kal
지 방	3g	1.5g
나트륨	120mg	120mg
콜레스테롤	20mg	10mg
포화지방산	1.5g(1.5g이하일 경우, 포화지방산 총열량의 10%이하)	0.75g(0.75g이하일 경우, 포화지방산 총열량의 10%이하)
당 성분	5g	2.5g

자료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언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 보충가능섭취량(可補充攝取)

- 섬유질,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E, 칼슘, 철분 등의 성분은 섭취량 부족 시 인체에 해를 끼침
- 하기표 이상일 경우에는 <高>, <多>, <強化>, <富含有> ; < 풍부 > 등으로 표기할 수 있음

구분	고체(반고체) 매100g당	액체 매100ml당	액체 100kcal당
섬유질	6g	3g	3g
비타민A	180mg	90mg	60mg
비타민B	0.42mg	0.21mg	0.14mg
비타민B2	0.48mg	0.24mg	0.16mg
비타민C	18mg	9mg	6mg
비타민E	3.6mg	1.8mg	1.2mg
칼슘	240mg	120mg	80mg
철분	4.5mg	2.25mg	1.5mg

자료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인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 하기표 이상일 경우에는 <來源 : 근원>, <供給>, <含有>, 표기 가능함

구분	고체(반고체) 매100g당	액체 매100ml당	액체 100kcal당
섬유질	3g	1.5g	1.5g
비타민A	90mg	45mg	30mg
비타민B	0.21mg	0.11mg	0.07mg
비타민B2	0.24mg	0.12mg	0.08mg
비타민C	9mg	4.5mg	3mg
비타민E	1.8mg	0.9mg	0.6mg
칼슘	120mg	60mg	40mg
철분	2.25mg	1.13mg	0.75mg

자료 : 시판포장식품영양표시공인규범(市售包裝食品營養宣稱規範)

2. 수입식품에 대한 라벨링 검사

- 수입식품검역은 위생서가 발표한 「위생관리법」, 「위생관리법세칙」, 「수입식품검사방법」, 「수입식품검사작업요점」 등에 따라 관리되며, 표준검사국 및 그 직할 분국에서 검역작업을 실시함

- 수입식품검역기록표의 <외관검사> 필수상품으로 등록된 물품 외에도 현장검사 필수물품은 검역검험 신청 및 실시 이후 수입 가능. 외관 검사 중 라벨링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관검사 해당 품목은 아래사항을 주의해야 하며, 동시에 그 불량사실은 기록을 남기게 됨
 - 포장 및 표기 완전 여부, 청결 여부, 파손 여부
 - 상품 외부 누출 및 누패, 해충 및 이물질 감염 여부
 - 불쾌한 냄새 유출 여부
 - 기타 식품안전에 유해한 현상 여부

- 식품첨가물은 수입신고서 상 “물품명칭”란에 「식품용」 「식품첨가물」을 기입해야 하며, “규격”란에는 「상품생산 LOT NO」 기입이 의무화 됨
 - 빠른 통관을 위해 수입업체는 반드시 행정원 위생복지부의 공고에 따라 실시
 - 행정원 위생복지부 공고 부수식자 제10213016956호 (2013년 6월 19일 공고)
 -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 수입식품 라벨링 검사 작업
 - 식품위생관리법 및 시행세칙, 건강식품관리법 등의 관련 규정
 - 중문표기 미완성 또는 중문원본 표기내용이 식품위생관리법에 위반될 시 <표기불합격처리>를 함

- 중문표기 면제품

- Bulk 형태 수입: 최소단위 포장 중량이 3KG 이상,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수입 후 재포장, 포장 변경 및 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 기타 위생서 및 표준검역국의 표기 면제 등의 물품: 위생서 및 표준검역국의 동의서 복사본 제출

- 수입식품의 유효기간 검사 주의사항 및 그 처리 방식

- 원 포장상에 직접 인쇄 방식: 인쇄된 유효기간 글자의 탈색 및 불명확함이 없어야 하고, 스티커로 단독 부착해서는 안 됨
- 전체 중문 라벨이 스티커 방식으로 부착된 물품: 그 모든 표기 항목이 원포장 인쇄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유통일자는 단독 라벨로 부착해서는 안 됨
- 유통기한 표시: 년/월/일로 표시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인 경우 년/월만 표시하여도 되나, 그 일자는 반드시 당월 말일까지를 나타내야 함
- 검험검역 이후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상품은 검역허가증이 발행되지 않음
- 유통기한이 3개월 이내 남은 물품은 그 검사 증명의 유효기한도 상품의 유통기한 내로 제한함.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인 물품은 검사증명 발행 이후 즉시 행정원 위생서로 통지하여 그 물품의 유통과정을 지속 관리함
- 중문표기 부착 시 원문 표기내용이 가려져서는 안 되며, 고의적으로 은닉한 경우 위생 관리법 제 22조 위반으로 간주함
- 수입물품인 경우 수입업체는 제품 포장 상에 <대만 제조>등과 같은 내용 및 글자를 표시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만 국내업체의 명칭, 주소, 전화 등이 표시되어야 함
- 포장 상에 표기 시 표기글자의 길이와 폭은 2mm이상으로 제한, 단, 최대면적이 10cm²이내인 소포장인 경우, 품명, 업체명, 유효기한 이외 기타 항목은 2mm이하로 해도 무방함

- 중문표기 라벨 부착면제 심사

- 일반적으로 분리 포장, 포장 변경 또는 기타 가공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식품 원료는 중문라벨 부착이 면제됨
- 분리 포장, 포장변경, 기타가공이 필요한 물품의 상세 설명
 - 식품가공공장에서 수입 후 분리포장, 포장변경, 기타가공을 할 경우
 - 식당경영업자,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 경영업자가 음식 조리 시 사용하는 경우
 - 수입업체에서 수입 후 분리포장, 포장변경, 기타가공을 할 경우
 - 기타 위생서의 특별 동의 물품
- 식품가공업체 해당 시 아래 열거된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원 위생서 또는 표준검역국에 면제 신청을 함
 - 중문표시 면제신청서
 -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 등기증 복사본
 -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具結書 : 제출된 자료 모두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보증서)
 - 상품의 원포장 및 제조업체 원포장 상의 표시와 관련된 자료
 - 포장 변경 및 분리물품의 최종 상품 외포장을 첨부해야 함
- 식당,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 경영업자인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생서 또는 표준검역국에 면제 신청함
 - 중문표시 면제신청서
 -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
 - 원상품의 외포장
- 일반 수입업체인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생서 또는 표준검역국에 면제 신청함
 - 중문표시 면제신청서
 -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 수입업체 책임 구결서

- 원상품의 외포장
-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공장 등기증 복사본, order sheet 또는 인보이스 복사본
- 수입식품의 최소단위 포장은 1KG 이하이고 그 포장을 밀폐 처리한 물품은 포장 변경 및 분리 포장 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중문표기 면제신청 상품은 수입 시 포장 상 원료명칭, 제조업체, 내용물, 유효기한 등 제조관련 사항이 원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그것을 검험·검역 작업의 근거로 삼음
- 표준 검역국 및 그 관할 분국이 수입식품 중문표기 면제를 동의한 경우, 그 동의서를 위생서로 통지함
- 수입식품 중문 표기 면제 대상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그 동의서 일자 기록함)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만기 3개월 전 연장 신청을 함
- 중문표기가 면제된 수입식품은 표준검역국 및 그 관할국 조사하여 실제 물품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체는 모든 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수입식품 중문 라벨링 불합격 기준

- 수입 식품 포장 상, 원문 및 중문 라벨링 未표기

- 유효일자

- 원문 및 중문 유효기간 未표기
-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 초과
- 표기된 기한이 인정할 수 없는 유통일자일 경우
- 표기된 기한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글자 표기가 모호하여 내용 분별이 불가능한 경우

- 수입업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未표기

- 표기된 수입업체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
- 10KG 이상 유제품 상 <식용>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거나, 수출국 위생기관 및 농업관련기관의 위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 치료 효능 등 과대 및 허위 표기인 경우
 - <경고> 특정 경고표시 식품이나, 표기되지 않은 경우

VIII 대만 바이어 정보

※ 바이어 리스트는 별도 엑셀 파일에 기재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 Kotra 무역 정보(<http://www.globalwindow.org>)
- 대만 식품소비조사 통계연감
- 대만 경제부 (<http://www.moea.gov.tw/>)
- Taiwan Alibaba (www.china.alibaba.com/)